

의정부지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

<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 2023. 11. 27.>

1.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소비를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 숙소비는 해당 주택 임차 실거래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하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소비 산정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2. 사업주가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는 해당 임차계약서상의 실거래가를 넘지 않도록 하고,
 - 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 주거하는 경우 월세 등 숙소비는 근로자가 공동 부담($1/N$)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부과한다.
3. 사업주가 본인 소유의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는 해당 숙소 주변 주택의 실거래가 등을 참조하여 결정하며, 주변에 참조할 만한 실거래가 정보 등이 없는 경우 '의정부지청 지역별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4. 가설건축물(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등 주거환경 개선 지침('21.1월) 상 숙소제공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의정부지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해당 지역 연립/다세대주택 월세 최저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의정부지청의 경우 관할 구역이 넓고 지역별 및 지역 내 중심지와 외곽지 간 월세의 편차가 심하므로 월세 기준은 '지역(시,군)' 단위로 실거래가의 중간값(50%)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그 기준은 붙임과 같다
 - * 임차료에 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전환율(한국은행 기준금리+2%)을 기준으로 산정

(붙임) 의정부지청 지역별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

지역	구분	3.3㎡(평) 당 월세액(원)	
		가이드라인 (‘23.1.1.~10.31. 기준 실거래가의 중간값)	최저가 (임시주거시설 숙소비 상한액) (‘23.1.1.~10.31. 기준 실거래가의 하위 10% 값)
의정부	단독/다가구	33,875	-
	아파트	45,731	-
	연립/다세대(빌라, 원룸 등)	35,263	24,103
구리	단독/다가구	45,400	-
	아파트	64,524	-
	연립/다세대(빌라, 원룸 등)	53,506	37,268
남양주	단독/다가구	48,933	-
	아파트	44,582	-
	연립/다세대(빌라, 원룸 등)	34,714	21,550
동두천	단독/다가구	36,105	-
	아파트	31,068	-
	연립/다세대(빌라, 원룸 등)	25,944	13,486**
양주	단독/다가구	41,056	-
	아파트	32,615	-
	연립/다세대(빌라, 원룸 등)	31,970	15,902
포천	단독/다가구	32,806	-
	아파트	32,099	-
	연립/다세대(빌라, 원룸 등)	29,941	13,975
연천	단독/다가구	42,700	-
	아파트	26,223	-
	연립/다세대(빌라, 원룸 등)	22,032	13,486**
철원	단독/다가구	13,512	-
	아파트	25,547	-
	연립/다세대(빌라, 원룸 등)	30,354	16,462

* 동 가이드라인은 '23.1월~10월까지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였음

* 가이드라인 적용 시 면적 산정은 전용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하되, 임대인 또는 사업주와 공동 거주하는 경우 1/N(거주인원)을 이용면적으로 함

* 가이드라인 금액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주택에 다수(N명)가 거주하는 경우 또는 N명의 거주를 예상하고 임차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과 액수는 1/N 이하로 산정되어야 함

** 연립/다세대 최저가는 실거래가의 하위 10% 값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실거래가의 하위 50% 평균값 중 최저값을 하한으로 하여 결정하였음(동두천, 연천에 적용)

(예시: 하위 10% 값이 하위 50% 평균값 중 최저값(13,486원, 연천) 보다 적은 경우 해당 지역 연립/다세대 최저가는 13,486원임)